

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·금액·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|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안내 - 자가진단

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.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에만 답하고, 조건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세요. 공식 원문과 접수기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 공식 원문:
<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5001>

확인할 사항	예 / 아니오 / 해당 없음	메모
유형 1·현재 발생 상황: 주소득자가 사망·가출·행방불명·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나요?		
유형 2·현재 건강상황: 본인 또는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나요?		
유형 3·가구 내 피해 상황: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학대를 당했나요?		
유형 4·폭력 피해 상황: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나요?		
유형 5·주거 불가 상황: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가요?		
유형 6·사업소득 감소 상황: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·폐업·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졌나요?		
유형 7·근로소득 상실 상황: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상실했나요?		
유형 8·지역별 사유: 보건복지부령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했나요? 적용 사유는 거주지 시·군·구청에 확인합니다.		
유형 9-①·이혼 후 상황: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나요?		
유형 9-②~④·긴급 생활곤란 상황: 단전 상태이거나,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거나, 가족의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상태인가요?		
유형 9-⑤·기관 추천 대상: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·통합사례관리 대상자·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생계곤란 추천을 받았나요?		
유형 9-⑥·범죄 피해에 따른 이전: 타인의 범죄로 현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살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나요?		

확인할 사항	예 / 아니오 / 해당 없음	메모
유형 10·법률 적용 대상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또는 「10·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나요?		
공통 필수조건·소득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인가요? 1인 가구 1,923,179원, 2인 3,149,469원, 3인 4,019,277원, 4인 4,871,054원, 5인 5,667,539원, 6인 6,416,964원 이하이며, 7인 이상은 1인 증가 때마다 719,399원씩 늘어납니다.		
공통 필수조건·재산: 재산이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인가요?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입니다.		
공통 필수조건·금융재산: 금융재산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인가요?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공식 안내의 예시는 1인 가구 8,564천 원, 4인 가구 12,494천 원 이하이며, 주거지원은 이 기준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가 적용됩니다.		